

실험동물자원 관리 규정

제정 1986.12.3 개정 1991.4.1 개정 2014.7.15
개정 1989.5.29 개정 1999.3.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물실험의 승인과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반·출입, 사육관리 및 실험종료후의 처치 등 실험동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서 포항공과대학교 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내의 동물실험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의 적용은 살아있는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, 실험, 시험 또는 교육에 한정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연구소 등의 실험동물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실험동물관련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동물실험실시자” 라 함은 새로운 생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는 의학, 수의학, 치의학, 약학 및 생물학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험동물시설에서 동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2. “실험동물시설관리자” 라 함은 실험동물 또는 실험동물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책임을 갖는 자를 말한다.
3. “실험동물전문수의사” 라 함은 실험동물 의학 또는 실험동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에 있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의사를 말한다.
4. “실험동물사육기술자” 라 함은 실험동물의 사육·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험동물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.
5. “실험동물시설” 이라 함은 동물실험 및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공간을 말한다.

제4조(동물실험윤리위원회) ①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: 2008. 9.1)

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: 2014.7.15)
- ③ 위원회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: 2008.9.1.)
- ④ 위원에는 본교의 동물실험과 관련 없는 자 중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(개정: 2008.9.1.)
 - 1. ‘수의사법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
 - 2.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
 - 3. 변호사 또는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
 - 4. 동물보호 및 복지를 담당하는 교수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연구, 실험,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실험동물 사용에 관한 사항
 - 2. 실험동물 시설의 적합성 및 안전성과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등에 대한 실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⑥ 위원회에는 연구기획팀장을 간사로 둔다. (개정: 2008.9.1.)(개정: 2014.7.15)
- ⑦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의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 (개정: 2008.9.1.)

제5조(실험동물자원 관리부서) ①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각 실험동물시설의 행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연구센터를 관리부서로 한다. (개정: 2008. 9.1.)

- ② 관리부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동물실험의 승인) ① 동물실험실시자는 관리부서에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관리부서는 제1항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하고, 그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동물실험을 승인한 경우에는 동물실험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④ 실험동물 승인에 관련한 문서는 간사부서에서 보관하며, 승인번호가 부여된 동물실험에 관련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1.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
2.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법의 적절성
3.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
4.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
5.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
6.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·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
7.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
8.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

제7조(실험동물의 공급 등) ① 실험동물의 공급 및 실험동물시설에의 반입은 동물 실험실시자가 실험동물반출·입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.

② 실험동물 공급처 및 공급일은 실험동물반출·입신청서에 동물실험실시자가 작성한 의견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.

③ 동물실험실시자는 대학 내에 설치된 실험동물시설에만 동물을 반입해야 한다. 다만, 별도의 시설에도 반입코자 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④ 반입된 실험동물은 동물실험실시자와 실험동물사육기술자가 동시에 검역을 실시하여 활용여부를 판단하되, 그 결과를 관리부서에 1차 구두 보고하고 해당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실험동물의 반입은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운반되어야 한다.

⑥ 동물실험실시자와 실험동물시설관리자는 반입된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육시설의 환기, 조명, 소음, 온도 및 습도 등을 조절하고 사료, 음용수 및 깔개 등을 선택해야 하며 동물실험이 적절하도록 시설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실험동물의 사용) ① 동물실험실시자와 실험동물사육기술자는 동물의 성장, 발육상태, 전신상태, 이송기록 및 질병 유무 등을 기록해야 하며, 수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동물전문수의사의 지도와 조언을 받아야 한다.

② 동물실험실시자는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다르게 실험동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실험동물사육기술자는 동물실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악하여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실험동물사육기술자는 실험동물의 이동사항 발생시 그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리부서에 1차 구두 보고하고 해당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에 서면으로 보고한

다.

제9조(동물실험의 종료 등) ① 동물실험실시자는 실험을 종료하거나 또는 중단할 때에는 실험동물을 위원회에서 제안된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 한 최단시간 이내에 의식을 소실케 하고 신속하게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안락사 시켜야 한다.

② 동물실험실시자는 실험 중, 실험 중단 또는 실험 종료에 따른 사체 발생에 대한 사항은 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하며, 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사체를 보관 또는 검사하고 외부로 운반하여야 한다.

③ 실험동물의 사체는 각 실험동물시설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.

④ 동물실험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물실험실시자 또는 실험동물시설관리자는 실험동물의 반출·입에 대한 모든 기록 사항을 관리부서에 보고하고, 동물실험실시자는 동물실험종료보고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.

제10조(특수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험) ① 방사선동위원소, 병원체, 재조합 DNA, 발암물질, 변이원성 물질 및 기타 안전성 미확인물질 등 물리적, 화학적 및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의 경우에 동물실험실시자는 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러한 특수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동물실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 등 별도의 관리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② 동물실험실시자는 사람 및 동물에 대한 오염과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사육 및 실험 구역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③ 동물실험실시자는 유전자 도입 동물을 다루는 동물실험에 있어서는 동물실험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험동물시설과 사육실 등에서 해당 동물의 습성을 숙지하여 도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.

제11조(부담금) 동물실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동물실험실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기타 실험동물자원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운영 등에 따른 필요 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제정·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